

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공원 내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안번호	2368
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3. 9. 5.
제 출 자 : 금 천 구 청 장

1. 제안이유

금나래공원 내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민 공간을 활성화하고, 시설 사용료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- 나.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- 다.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3조)
- 라. 커뮤니티센터 활성화 사업(안 제4조)
- 마. 교육 및 홍보(안 제5조)
- 바. 사용신청 및 승인 등(안 제6조부터 제9조)
- 사. 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 등(안 제10조부터 제1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
- 2) 「지방자치법」 제153조

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
다. 협의기관: 해당없음

라. 기 타

- 1) 신·구조문 대비표: 해당없음
- 2) 입법예고(2023. 7. 27. ~ 2023. 8. 16.) 결과: 의견없음
- 3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별도첨부
- 4) 규제사전심사: 원안동의(기획예산과)
- 5)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(민원감사담당관)
- 6) 성별영향분석평가: 원안동의(가족정책과)

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공원 내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금천구 금나래공원 내 커뮤니티센터 활성화와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커뮤니티센터”란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14에 소재한 서울특별시 금천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에게 개방이 가능한 금나래공원 내 교양 시설을 말한다.
2. “지역”이란 구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적·사회적 범위를 말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커뮤니티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커뮤니티센터 활성화 사업 등) ① 커뮤니티센터 활성화 사업의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거나, 예산의 범위에서 구민 및 단체·기관 등에 커뮤니티센터 시

설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 및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지역 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
2. 지역 사회의 복지증진
3. 커뮤니티센터 활성화와 관련된 프로그램 및 단체·기관 지원
4. 지역 문화예술 및 역사 보전 등

②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별표 1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커뮤니티센터 활성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참가비를 징수할 수 있다. 단, 별표 1의 면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비를 면제할 수 있다.

제5조(교육 및 홍보) ① 구청장은 커뮤니티센터 활성화와 공동체 조성을 위해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·홍보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단지·소책자·스티커 등의 홍보물을 교육기관, 기업 및 민간단체 등에 배부할 수 있으며, 홍보 문구가 기재된 홍보 물품을 캠페인 및 교육 대상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.

제6조(사용신청 및 승인)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20일 전부터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승

인 여부를 결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사용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.

제7조(사용제한 및 승인 취소 등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승인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.

1.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
2.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
3. 각종 정치, 종교, 영리 행위 등을 하는 경우
4.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
5. 그 밖에 공익상 시설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
제8조(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) ①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을 위하여 주관하는 행사 등은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.

제9조(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) ① 사용료는 대관 승인 후 3일 이내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.

1. 천재지변,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: 전액 반환
2. 국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·정지된 경우: 전액 반환
3.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요청한 경우: 전액반환
4.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요청한 경우: 50 퍼센트 반환

제10조(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)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② 사용자의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사고 및 인적,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.

제11조(양도 및 전대의 금지)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승인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.

제12조(입장 및 행위 제한) 구청장은 커뮤니티센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1.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영유아
2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
3. 위험물이나 악취·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
4.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(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제외)
5.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와 범죄예방,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사람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금나래공원 내 커뮤니티센터 프로그램 참가비

(제4조 관련)

구 분	사용기준
프로그램 참가비	1회당

○ 면제기준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
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3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 장애인
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가족
5. 「국가보훈기본법」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
6. 65세 이상 노인 또는 13세 이하 어린이
7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금나래공원 내 커뮤니티센터 시설 사용료

(제8조 관련)

구 분	사용기준	금 액	비 고
강의실 사용료	1시간	20,000원	초과시간 1시간당 사용료 50% 할인

사용신청서

(제6조제1항 관련)

사 용 자	성 명 (단체명)			
	주 소			
	생 년 월 일 (사업자등록번호)			
	이 동 전 화			
	대 표 자 명 (단체신청시)			
행사목적	행 사 명			
	행 사 주요내용	※ 행사계획 등 첨부		
사용일시	사용일자	202 년 월 일		
	사용일시	시 분 ~ 시 분 까지		
	준비대관	202 년 월 일 시 분 ~ 시 분 까지		
	철수대관	202 년 월 일 시 분 ~ 시 분 까지		
냉·난방 사용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냉방	<input type="checkbox"/> 난방		
싱크대	<input type="checkbox"/> 사용	<input type="checkbox"/> 미사용		
상기와 같이 커뮤니티센터 사용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사 용 자 (서명 또는 인)				
사용자는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청장이 편익시설 사용신청 자격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 니다. 사용자가 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사용자가 직접 제출하여야합니다. 년 월 일 사 용 자 (서명 또는 인)				
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				

**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공원 내 커뮤니티센터 운영에
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**

1. 비용발생 요인

-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3조제2항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써
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3조제2
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
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비용
추계서를 미첨부함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자치행정과 지역공동체팀 신지숙
연 락 처	2627-1994

관 계 법 령
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[시행 2022. 1. 13.]

제40조(입장료 등의 징수) ① 공원관리청과 공원수탁 관리자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공원시설을 설치한 도시공원에 한정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공원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② 공원관리청과 공원수탁 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입장료 및 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공원관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원수탁 관리자가 이를 정한다.

③ 제2항 단서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입장료를 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[시행 2023. 3. 7.]

제46조(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)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입장료 또는 공원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은 도시지역 내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공원시설을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원시설은 당해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이어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09.12.31, 2012.3.13>

1. 공원시설 중 조경시설·휴양시설·편익시설 및 공원관리시설
2. 그 밖에 공원시설로서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

지방자치법 [시행 2023. 6. 7.]

제153조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